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건설(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전기화상 3-4도(안면부, 양수관절부, 양슬부, 우대퇴부, 우하지)” 및 추가상병 “1)하악 골결손상, 2)좌측족부 제1~4족지 결손상”으로 요양 중 개호신청한 경우.

(89-29호 89. 2. 20.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문○○

주소 : 광주직할시 광산구 신가동

원처분청 : 서울지방노동청장

주 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1988. 11. 18.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개호)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1. 18.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개호)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건설(주)소속 근로자로 근무중 1986. 11. 19. 19 : 45분경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기화상 3-4도(안면부, 양수관절, 양슬부, 우대퇴부, 우하지)로 전남대 부속병원, 광주 효성병원등에서 요양하다가 1987. 12. 29. 서울 을지병원으로 전원,

추가 상병명 “1) 하악골결손상 2) 좌측족부 제1-4족지 결손상 3) 우측족부 제1-3족지 결손상”으로 현재 입원 요양중인 자로서 원처분청에 요양(개호)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산재보험이 종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의 개호 범위(예규 119호 제3항 제6조)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호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국립의료원 주치의 소견과 같이 “상병명으로 수술후 식사문제 및 장골이식으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있어 개호가 필요함”임으로 1988. 8. 25. ~ 11. 3.(71일간)까지 개호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으로 보아 1988. 8. 25 ~ 11. 3.(71일간)까지를 한정하여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9. 1. 14. 문○○)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1. 20. 서울지방노동청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8. 12. 22. 김○○)
4. 개호승인 신청서 사본(1988. 11. 13. 김○례)
5. 환자 상병상태 및 간호의 필요성 소견서(1989. 1. 11. 국립의료원장)
6.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데, 청구인은 ○○건설(주)소속 근로자로서 1986. 11. 19 : 45분경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기화상 3-4도 (안면부, 양수관절, 양슬부, 우대퇴부, 우하지), 추가상병명 2) 하악골절손상 3) 좌측족부 제1-4족지 결손상 4) 우측족부 제1-3족지 결손상”으로 전남대 부속병원, 서울을지병원을 거쳐 국립의료원으로 전원하여 “하악골 결손”수술을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담당 주치의 소견에 따라 1988. 8. 25. ~ 동년 11. 3.(71일간)까지 개호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자문의 소견이 “개호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개호료 지급기준의 개호 범위(예규 119호 제3장 제6호)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호 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하악골 결손”수술후 전혀 거동할 수 없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의 상병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1988. 11. 3. 자 국립의료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 “상병명으로 수술후 식사문제 및 장골 이식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어 개호가 필요함”이고 1989. 1. 11. 자 국립의료원장 발행, 환자 상병상태 및 간호의 필요성 소견서상

“하악골의 정중부에서 골 결손으로 인한 불안정한 하악골”의 상병명으로 소견 내용이 “상기 병명하에 내원하여 하악골 정중부의 골 결손을 메꾸어 주기 위해 유리 장골어식(엉덩이 뼈의 일부를 떼어 내면서 혈관을 가져와 얼굴의 혈관에 이어주는 수술)을 1988. 8. 25. 시행하였으나 유리장골 이식한 혈관이 막혀 다시 1988. 8. 30. 왼쪽에서 떼어낸 유리장골어식을 시행하였음. 이때 유리피관의 일부가 괴사하여 왼쪽 광배근을 떼어내어 유리피관으로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덮어주었음. (1988. 9. 12) 따라서 좌우 장골을 모두 떼어냈으며 좌측 광배근까지 떼어냈으므로 환자는 당시에는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었으며, 호수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했으며,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음.-----이하 생략-----또한 상기환자는 수술후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개호가 필요했음”이다.

둘째 :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개호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개호범위 미달로 개호불승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치의와 자문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경우 예규 제119호 개호료 지급기준 제3장 제6조 9호인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환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1988. 8. 25. ~ 동년 11. 3.(71일간)까지 한정하여 개호승인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험법에 의한 개호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건설(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전위, 2)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3) 우측 상박골 경부 골절”로 요양중 개호신청한 경우.

(89-60호 89. 3. 20.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신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원처분청 :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한 ○ ○

주소 : 상 동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2. 10.자 청구인의 남편 한○○(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호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건설(주)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1985. 12. 5. 작업중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전위, 2) 척추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3) 골절 상박골 경부, 우”로 백병원 및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에서 요양중인 자로서 원처분청에 1988. 11. 11 ~ 1989. 1. 10.까지 61일간 개호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배뇨 및 배변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개호인의 도움 요함”이나 원처분청 자문의는 “개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어서 피재자의 상병상태가 개호료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호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 본부 자문위에 자문한바 “하반신 마비로 인한 후유증 또는 병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상일(1985. 12. 5)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 특이한 후유증 또는 병발증이 발생된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개호를 인정할 수 없음”으로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가 1988. 1. 1.부터 상병보상 연금 1급 대상자로 되었으며 현재 대·소변이 자력으로 불가능하므로 개호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 상태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1989. 2. 11 신○○)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2. 17 서울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2. 3. 홍○○)
4. 개호승인 신청서 사본(1988. 11. 10. 한○○)
5. 주치의 소견서 사본
(1988. 11. 10.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장)
6. 주치의 소견에 대한 상병상태 조회 회신 사본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장)
7.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 사본(1989. 1. 31. 김○)
8. 기 타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피재자가 1985. 12. 5. 작업중 피재되어 요양중 1988. 11. 11부터 1989. 1. 10까지 61일간 개호신청한데 대하여 원처분청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데, 1988. 11. 10.자 개호 신청서상 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상병명으로 배뇨 및 배변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개호인의 도움 요함”이고 원처분청이 주치의 소견에 대한 상병상태 조회결과를 보면 “1) 현 상병상태 : 양하지 슬관절 신전근 이하 완전마비와 배뇨, 배변의 조절능력 상실로 요도감염 재발이 빈번한 상태이며, 흉요추부 내구속 고정상태, 2) 통원시 교통수단 :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어려운 상태로 택시 승차 등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개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이라 하였으며 노동부 본부 자문의 소견도 “하반신 마비로 인한 후유증 또는 병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상일(1985. 12. 5)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 특이한 후유증 또는 병발증이 발생된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개호를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인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건데, 1987. 9. 11부터 통원치료중에 있고 상지 수상부위에 대한 특이한 소견이 없는 사실로 보아 노동부 예규 제 119호 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개호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